

보험약관 해석방법론에 대한 재고찰 (보험의 기본원리에 의한 제한)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법학과)

변호사, 법학박사

20240125 수요일

고지: 본고는 2023년 대법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발표를 위해서 요약한 것으로 무단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전통적 보험약관 해석방법론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

판례법상 보험약관해석방법론들

- 편입통제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해석통제
 - 객관적 해석
 - 통일적 해석
 - 작성자 불리의 원칙
 - 면책약정과 엄격해석원칙: 수정해석과 제한해석
 - 경제적 의미와 목적의 고려
 - 약관해석시 전체적 맥락의 고려
 - 신의칙에 기한 보험약관해석

상세는 최승재, 「금융거래법」, 피앤씨미디어 (2016) 참조

해석의 인적 기준: 평균적 일반인

- 계약해석: 합리적 인간
- 계약해석: 계약의 양당사자가 의사합치된 내용의 발견
- 약관해석: 대량적 표준적 계약이라는 특정+협상기회의 부존재
- 약관해석에서의 기준: 합리적 인간+bias & heuristic
- 법원의 보험약관 해석기준: 평균적 일반인

계약의 해석 vs 약관해석

-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 ✓ 효력이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한하는 소위 **효력유지적 축소해석(geltungserhaltende Reduktion)**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 ✓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란 법원이 문제된 불공정조항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 유효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고, 유효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해석방법론은 약관해석에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 독일의 통설은 효력유지적 축소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계약조항은 전부 무효이며, 그 무효인 조항에 갈음하여 관련 임의법규가 적용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 보충적 해석이 행해진다고 보고 있다.

면책약관의 위치

Exemption

Exclusion

약관의 분류

- 면책약관
- 특약사항

Suggested flow

- Q1: 면책약관인가?
 - IF YES: MOVE to 1-1
 - IF NO: MOVE to 2
- Q2: plain language rule에 의할 때 interpretation에서의 ambiguity가 존재하는가?
 - IF YES: MOVE to 2-2
 - IF NO: MOVE to 2-1

1단계: 법원은 약관 전체의 문언을 보험약관에서의 계약해석 일반원칙 적용한다.

- ✓ ① 당사자간의 의사해석과 관련하여 민사계약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평균적 고객(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통상적인(plain and ordinary)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의미는 주관적인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독일민법과 달리 약관법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약관법에 의한 제한이 고려되어야 한다.
- ✓ ② 약관의 모든 조항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문언의 해석은 동일한 보험약관(보험증권) 내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앞서 보험의 기본원리들도 이 단계에서 고려된다.
 - ✓ Note: “보험의 기본원리들도 이 단계에서 고려된다”의 의미는 보험약관의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보험법이 금지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해석되거나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보험의 기본이론으로서 보험 일체에 적용되는 원리 및 개별보험의 형태에 비추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기본원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보험의 특성이 이 단계에서 고려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 ✓ ③ 보험약관(보험증권) 내에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우선하며, 수기 문구와 인쇄 문구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수기 문구 기재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 ✓ ④ 보험약관이 법 규정의 문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 그 약관 규정은 법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한다.
- ✓ ⑤ 관련 법규에 대한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그 해석을 존중된다.

(약관이 면책조항인 경우)

1-1단계: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면책은 당사자 의사의 추정을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위 1단계에서의 해석 결과 약관 문언이 명확한 경우)

2-1단계: 평균적 고객관점에서 약관 문언이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약관의 문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하나로 귀결되는 경우), 약관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 1단계에서의 해석 결과 약관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 ✓ **2-2단계: 평균적 고객관점에서 약관 문언에 대해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불명확한 경우), 약관문언은 불명확성을 감안하여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 **Note:** 보험약관의 문언이 분쟁의 쟁점인 경우, 약관 문언이 불명확한지 여부는, 합리적·이성적인 평균적 고객 관점에서, 전체적인 계약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2-2-1단계: 약관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신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는 점 및 유일한 공정한 해석이라는 점 또는 2-2에서 도출한 해석이 보험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2-2단계의 해석은 본 단계에서의 해석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정해석, 제한해석, 또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여야 한다.**
 - ✓ **법원은 2-2-1단계에서 보험목적물(the subject matter of the policy), 보험에 의해서 부보되는 위험의 본질, 보험계약의 목적(the purpose of the policy)을 종합하여 해당 문언을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모든 조항이 의미와 효력을 갖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며, 당사자**

보험약관해석과 보험법의 기본원리의 반영



약관해석의 예측가능성 확보 & 금융소비자로서의 보험가입자 보호

약관해석의 예측가능성 확보

금융소비자로서의 보험가입자 보호

- 보험상품 개발과정
- 보험상품 판매과정

Personal contact : lawntech1@naver.com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 ”

- ✓ 발표자 최승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법학)를 하고, 미국 뉴욕 소재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호사를 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 ✓ 현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세계지재권보호협회(AIPPI) 한국 부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 중
- ✓ 저서로는 <음악저작권침해와 법>, <개인정보>, <미국특허법>,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금융거래법> 등의 10여권의 단독저서가 있고, 그 외 저술로는 단독저서 2배 정도의 공저가 있고, 10배 정도의 논문이 있다.
- ✓ 지금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기술변화를 통해 살고 있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Discussions & Questions

personal contact:
lawntech1@naver.com

